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28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피고가 2017. 7. 6.[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7. 7. 7.'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7. 7. 6.'로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업 및 최종 매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redacted]남도지사는 1997. 1.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redacted]남도 [redacted]시 B 일대(39,910,335㎡)를 C(변경 전 D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 6. 8.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사이에 [redacted]시 H 공장용지 59,7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2.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용지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음 2012. 12.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인정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513,163,390원, 지방교육세 47,536,1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560,699,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환경영향평가 실시,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가 2018. 11. 기준 약 87% 가량 진행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절차들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거나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폐기물처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분양공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2. 7. 19. 자 입주계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 등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당초 이 사건 산업단지에 매립용량 312,200㎥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업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매립용량을 1,873,000㎥로 증대하는 1차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이러한 신청이 반려되었고, 재차 2차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 점, 원고가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이외에 그 인근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처리업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후 2012. 7. 19.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분양공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면서, 2012. 7. 25.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공고 누락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3. 6. 7. I언론에 '이 사건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다시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2013. 7. 12. 원고에게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 제외)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3) 원고는 2013. 8.경 [redacted]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을 당초 승인된 매립용량 312,200㎥에서 1,873,000㎥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제1차 실시계획변경신청'이라 한다), [redacted]남도지사는 2014. 3. 19.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음.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운영 중인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고려할 때 매립시설 용량 증가는 객관성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4. 7.경 다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을 1,324,000㎥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이하 '제2차 실시계획변경신청'이라 한다). [redacted]남도지사는 2014. 11. 10. 이에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절차, 주민설명회와 [redacted]남도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여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였고, 2014. 11. 14. 위 변경승인 내용을 [redacted]남도 고시 J(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한다)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5) 원고는 2014. 12. 9.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 2015. 11. 9.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협의내용을 통보받았다.

6) 이에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6. 12. 14.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2017. 2. 13.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적정 통보를 받은 후 2017. 8. 11.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7. 준공연월일을 2019. 6. 26.로 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8) 그 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8. 1.~3.경 원고에게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일치시킬 것을 2회에 걸쳐 행정지도하였고,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5. 10. 이 사건 적정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9)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8.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항고소송(2018구합103364호)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6. 24. 이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2020. 7. 7.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 2020누1178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10)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을 한 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과, 2019. 12.경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과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redacted]남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 승인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11) 이에 따라 [redacted]남도지사는 2020.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을 삭제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 13, 14, 20, 21, 23, 26, 41, 44, 45, 47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8, 35,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폐기물처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계약 체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분양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그와 같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공고 누락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반려되거나 그 절차가 지연된 것은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13. 8.경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을 당초 승인된 매립용량 312,200㎥에서 1,873,000㎥로 증대하는 내용으로 제1차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매립시설 용량 증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청이 반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을 1,324,000㎥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원고의 제2차 실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는 [redacted]남도지사가 이를 승인하였던 점(당시 폐기물 발생량도 당초 승인된 223.22톤/일에서 1,674.89톤/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로 변경되었다), ② 이에 의하면 당초 승인된 매립용량에 비하여 약 4배 이상 매립용량이 증가된 것인 점, ③ 당초 승인된 매립용량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추정한 폐기물 발생량만을 기초로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입주 운영업체가 있는 경우 실제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고 예상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함으로써 제2차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 점, ④ [redacted]남도지사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 변경사유를 '합리적 토지이용 및 발생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용량 변경'으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당초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추정치보다 많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을 증대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승인된 매립용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제2차 실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14. 12. 9.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던 것인바, 원고의 제1, 2차 실시계획변경신청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었다거나 그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가 2015. 11. 9.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2016. 12. 14.에서야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1, 2차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하자 인근 주민들이 침출수 유출, 비산먼지에 따른 오염 등을 이유로 이에 크게 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발하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 증설에 반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민 설명회 개최, 지역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및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약 1개월 전인 2016. 11. 10.경에는 [redacted]시 B 주민들(이장협의회)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상호 협조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및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근 주민들과 협의 등을 거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8. 11.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7.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토목, 차수, 침출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여 2018. 11. 기준으로 전체 공정 중 약 87%[2]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 용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실제로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의 체결,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절차,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 해소 및 협의절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원고가 사업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2) 원고는 2020. 8. 20. 제5회 변론기일에서 약 94% 정도의 공정률을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이외에 그 인근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등이 지체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16. 12. 14. 위 영업구역 제한에 관한 각 승인 조건과 달리 '이 사건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적정 통보를 받았다가, 위 각 승인 조건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이 사건 적정 통보를 직권 취소하자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는 그 시기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2. 12. 28.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지체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적정 통보 이후 위와 같은 사정들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 더욱이 감사원은 2019. 12.경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과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피고 및 [redacted]남도지사에 대하여 위 각 승인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redacted]남도지사가 2020. 1. 31.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의 삭제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원고의 시도가 법률적·실질적 근거 없이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순전히 원고의 내부적인 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d판결문은d판결서d인터넷열람d사이트에서d열람d출력되었습니다r
영리목적으로d이용하거나d무단d배포를d금합니다r게시일자d:d2020d6d6q02

별지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단위: 원)

과세물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redacted] 토지 59,714.4㎡	본세	378,020,920 원	37,802,090 원
	일반무신고가산세	75,604,180 원	3,780,200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538,290 원	5,953,820 원
합계		**513,163,390 원**	**47,536,110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별지 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